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종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및 영암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산물 수출 진흥을 위한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분야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7월 2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327”을 “331”로, 일반직 계 “321”을 “325”로,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4”를 “75”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3”을 “6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42”를 “346”으로, 일반직 계 “336”을 “34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6”을 “77”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4”를 “67”로 한다.

별표 6 중 임업서기 “34”를 “35”로, 산림보호운영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임업서기 “64”를 “65”로, 산림보호운영서기 “4”를 “3”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7월 21일”을 “2028년 7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제16조제1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북부지방산림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횡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동부지방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고성군·양양군
남부지방산림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
서부지방산림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중부지방산림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지 방	국유림 관리소		
북 부	춘 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화천군·철원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과 경기도 가평군
	홍 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서 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과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수 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
	인 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민 북 지 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및 화천군·철원군·인제군의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동 부	평 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 릉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양 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영 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 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삼 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하장면을 제외한다)·동해시

	태 백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
남 부	영 주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예천군·봉화군
	영 덕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구 미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김천시·구미시·상주시·경산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울 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경상북도 울진군·울릉군
	양 산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
서 부	정 읍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완주군
	무 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영 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도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나주시·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장흥군
	순 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
	함 양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중 부	충 주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증평군
	보 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단 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부 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당진시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은 각각 <u>2026년 7월 2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8년 7월 21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27</u>	<u>331</u>	+4
·	·	·	
·	·	·	
일반직 계	<u>321</u>	<u>325</u>	+4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74</u>	<u>75</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3</u>	<u>66</u>	+3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42</u>	<u>346</u>	+4
·	·	·	
·	·	·	
일반직 계	<u>336</u>	<u>340</u>	+4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u>76</u>	<u>77</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4</u>	<u>67</u>	+3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임업서기	<u>34</u>	<u>35</u>	+1
·	·	·	
·	·	·	
산림보호운영서기	<u>4</u>	<u>3</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임업서기	<u>64</u>	<u>65</u>	+1
·	·	·	
·	·	·	
산림보호운영서기	<u>4</u>	<u>3</u>	-1
·	·	·	
·	·	·	